

## 1. 공통 유의사항

-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**신분증\***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 
바라며, **신분증 미소지자(접수등록 시 확인)는 시험 응시가 불가**합니다.
- \*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번호가 표기된  
여권)만 인정(모바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인정 불가)
- **집결시간\* 미준수자는 응시가 불가**합니다. (이후 종목도 응시불가)
- \* 집결시간은 공지된 **집결장소 도착 시점을 기준**으로 합니다.
-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을 위해 **특정소속(출신 군·학원·학교 등)을  
나타내는 의류 및 일체의 장신구**(반지, 목걸이, 팔찌, 귀걸이 등) 착용을  
**금지\***합니다.
- \* 금지된 의류와 장신구 착용 시 현장에서 탈의 및 제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, 이를  
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한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 
수 있으며 시험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 단, 개인기록 참고용 손목시계는  
착용이 가능합니다.
- 실기시험 현장의 불가피한 사정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 
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방법·집결시간·시험순서 등이 변경될  
수 있습니다. 변경 사항은 현장에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 공동으로  
안내되며, 응시자는 현장 안내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.
- 「당해시험 무효」 또는 「전체종목 실격」이라는 안내 및 고지가 없는  
「실격」 처리는 각 「종목 '0'점」 처리를 말하며, 다음 종목평가에  
응시할 수 있습니다. (총점의 60% 미만 득점자는 총점과락)
- 한 종목에 실격 및 중도 포기한 경우 해당 종목은 '0점'을 부여하고,  
다음 종목에 응시가 가능하나, 한 종목이라도 미응시(기권)한 경우에는  
다음 종목부터 응시가 불가합니다.

- 종목별 과락(0점, 시간 초과 등)이 될 경우 또는 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관계자는 응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종목의 평가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목은 '0점'으로 처리합니다.
- 실기 종목별 평가표에 기재된 **최저점수 미만 기록은 '0점'으로 처리합니다.**
  - ※ 예) ① 턱걸이 12개가 최저점 7점이므로, 11개 기록 시는 '0'점으로 처리
  - ② 구조수영(42m) 55초가 최저점 7점이므로, 감점 1점 시 6점이 아닌 '0'점으로 처리
- 응시자가 규정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, 현장에서 사전에 안내된 **금지된 방법으로 응시할 경우 해당종목은 실격 처리합니다.**
- 응시자 개인별 종목평가는 1회에 한하며, 재측정은 불가합니다.
  - ※ 단,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, 응시자가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(장비 불량, 他 응시자의 방해 등)이 있는 경우, 현장에서 시험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재측정 가능
- 육상종목 평가 시 스파이크화 및 부상 방지용 장갑(**일명 턱걸이 장갑 스트랩 등은 금지**), 송진가루는 사용이 가능합니다.(필요시 개별 준비)
- 잠수·구조종목 평가 시 **수영모를 착용**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기간 중 응시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부정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**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.**
- 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 약물\*을 사용하거나, 부정한 방법\*\*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향후 5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등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\* 「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」(인사혁신처고시 제2019-1호 (2019.1.8.))의 총 24종(동화작용제 7종, 이노제 3종, 흥분제 3종, 마약류 11종)
  - \*\* 부력 수영복 착용(몸 속 공기 주입), 사용금지 물품 사용 등 공정한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관계자가 직접 신체를 만지거나 특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
- 응시자는 종목별 시험 종료 시 감독관(측정관)과 함께 **반드시 본인 기록과 평가표 기록 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.**

- 시험장에는 응시자만 출입이 가능하며, 응시자를 제외한 일반인 (가족, 지인, 학원 관계자 등)의 출입 및 참관은 불가합니다.
- 시험과 관련하여 사전 허가된 내용 외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하며,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당일 시험이 종료된 응시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시험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즉시 시험장을 떠나야 합니다.
- 시험관계자의 시험진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**전체종목 실격처리와 함께 퇴장조치**를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체검사 중 **문신을 감추기 위해 「문신 커버 스프레이, BB크림, 셀프 태닝크림」**을 덧바르는 등 고의로 은닉한 경우는 **부정행위로 처리**되어,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8조에 따라 **당해 시험은 무효처리** 되고, 5년간 동 영에 따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감점 및 실격 사유, 유의사항 등은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께서는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특단·구조·특공(전술) 분야는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, 실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시험 일정 등 상세 정보는 5. 29.(금) 해양경찰청과 각 지방청 누리집,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(<https://gongmuwon.gosi.kr>)에 게시될 예정이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해당 채용 공고문 및 실기시험 유의사항,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모두 숙지·인용(認容)한 후 응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 2. 턱걸이, 왕복달리기(100m 허들), 2km달리기 평가방법

### □ 턱걸이

- 시험관계자의 준비신호에 따라 팔과 몸을 일자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응시자가 준비가 완료되면 “시작하겠습니다.” 등으로 시작 신호 후 시작하고, 그때부터 측정이 시작됩니다.
- 턱이 철봉 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고 목만 들어 철봉 위로 올리는 경우에는 횡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반동(배치기)은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각 1회 실시 후 팔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.
- 철봉을 잡고 처음 시작할 때 미끄러지는\* 경우에 한하여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.
  - \* 손바닥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·송진가루만 사용 허가(응시자가 개별 준비) 단, 스프레이식 접착제 등은 사용금지, **사용 시 실격처리 (응시방법의 임의변경)**

#### [무효사유]

\* 감독관은 횡수 무효 시 ‘무효’라고 큰소리로 고지

- 팔(팔꿈치)을 완전히 펴지 않고 올라 간 경우 <해당 횡수 무효>
- 턱이 철봉 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고 목을 들어 철봉에 닿는 경우 <해당 횡수 무효>

#### [중지(종료)사유]

- 한쪽 팔을 철봉에서 분리하여 늘어뜨려 휴식을 취하는 경우 1차 경고 후 2차 경고 시 평가 중지(종료)하고 <이전 횡수까지만 인정>
- 응시자가 철봉 지지대에 다리를 걸어 쉬는 등 ‘턱걸이’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즉시 중지(종료)하고 <이전 횡수까지 인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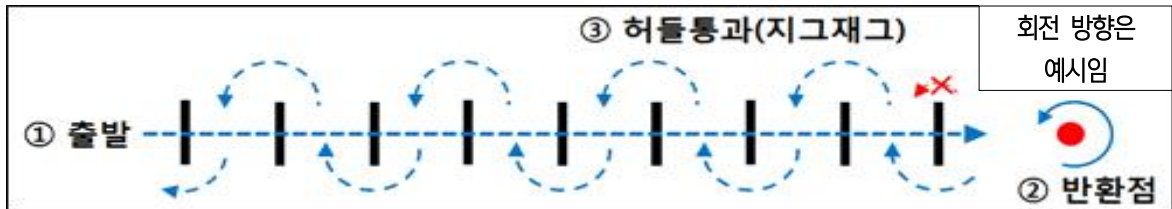
#### 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

- 허용되지 않은 장비(스프레이식 접착제 등)를 사용하거나 응시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평가에 필요한 응시자의 정확한 능력측정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
- ※ 장갑은 손바닥 부상방지용으로만 허용, 고리형태로 철봉에 끼우는 장치가 된 장갑, 헬스 스트랩(그립 밴드, 리프팅 밴드, 손목보호대 등 포함) 등 근력 보조 가능 제품 사용 불가

## □ 왕복 달리기(100m 허들)

- 허들 높이는 914mm로 하고, 허들은 10m 간격으로 9개를 설치합니다.
- ① 출발 후 허들을 넘어 달리고, ② 반환점 통과 후 출발선으로 복귀 시, ③ 반환점과 첫 번째 허들 사이부터 지그재그로 돌아옵니다.

※ 다음 그림과 같이 반환점 통과(회전 방향은 무방향) 후 허들을 지그재그로 통과



- 허들은 중앙으로 넘고, 양발이 모두 넘어가야 합니다.
- 전자계측기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, 준비 구령 이후 계측기 신호음에 따라 출발하며, 시간은 전자계측기에 측정된 기록으로 평가합니다.
  - \* 불가피하게 수기로 측정할 경우, 출발신호는 응시자보다 5m가량 앞서 깃발로 지면에서 하늘로 들어 신호(호각 소리를 병행할 수 있음)함. 이때 깃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출발 및 계측하고, 반환점을 돌아 출발선을 통과 해야 함.
- 출발선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스탠딩 자세로 출발하며, 부정 출발 시 통제에 따라 재출발하여야 합니다.
- 허들을 넘는 도중 발이 걸려 허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이나 발 등으로 고의로 허들을 넘어뜨리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.
- 달리는 도중 허들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응시자의 요구에 따라 휴식을 취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.

### [감점 사유]

- 허들의 바를 벗어나서 넘거나, 허들을 규정에 따라 넘지 않은 경우 각 개소 당 -2점
- 반환점부터 지그재그 허들 통과 방법 미준수 시 각 개소 당 -2점

### 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

- 출발오류(출발신호에도 미출발) 및 부정출발 시 1회는 경고, 2회는 실격처리
- 재측정 기회는 1회에 한 함. 예) 1회 부정출발 후, 도중에 넘어지는 경우 재측정 불가
- 허들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달리는 경우

## □ 2km 달리기

- 출발신호는 준비구령 다음 호각 1회(삐) 또는 깃발을 들어 신호하여 출발하도록 합니다.(6~8명씩 출발, 조 구성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)
- 출발선을 밟지 않고 스탠딩 자세로 출발하며, 부정 출발 시 호각 2회(삐 - 삐) 신호로 전체 중지 후 다시 출발합니다.
- 부정출발 및 최좌측 라인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 1회 경고 후, 2회 경고 시 **실격처리**합니다. (**0점 처리**)
- 기록은 개인별로 담당하는 시험감독관의 기록으로만 인정합니다.
- 달리는 도중에 他응시자를 고의로 밀거나, 추월시 他응시자의 코스 안쪽으로 추월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및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**실격처리**합니다. (**0점 처리**)
- 2km 지점 통과 후 타 응시자의 안전과 시험진행에 방해가 없도록 주의하며 즉시 트랙을 벗어나야 하고, 트랙을 벗어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트랙을 벗어나 他응시자의 시험을 방해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**실격처리**합니다. (**0점 처리**)

### 3. 잠수능력 측정 - 중성부력, 수중 잠수장비 탈·부착능력

#### □ 잠수장비 결합 및 점검

- 개인장비는 허용되지 않으며, 반드시 제공되는 장비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잠수장비결합 점검(평가)를 받은 후에는 장비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.

※ 웨이트벨트는 8kg까지 허용하며, 공기통은 압력이 110 bar 이하만 교체

(웨이트벨트는 반드시 착용. BC자켓 내에 웨이트를 넣어 부력 조절은 불가)

※ 제공장비 : 슈트, BC자켓, 핀, 웨이트, 마스크, 공기통, 레귤레이터

- 응시자는 장비를 충분히 점검\*하고, 정확히 장착한 후 시험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장비 장착 상태를 확인받습니다. 잠수장비결합 점검(평가)을 받은 이후 응시자가 선택하여 착용한 장비 상태 및 조작 불량 등으로 인한 평가 결과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\* 시험진행상 필요시 사전 고지 후 장비 장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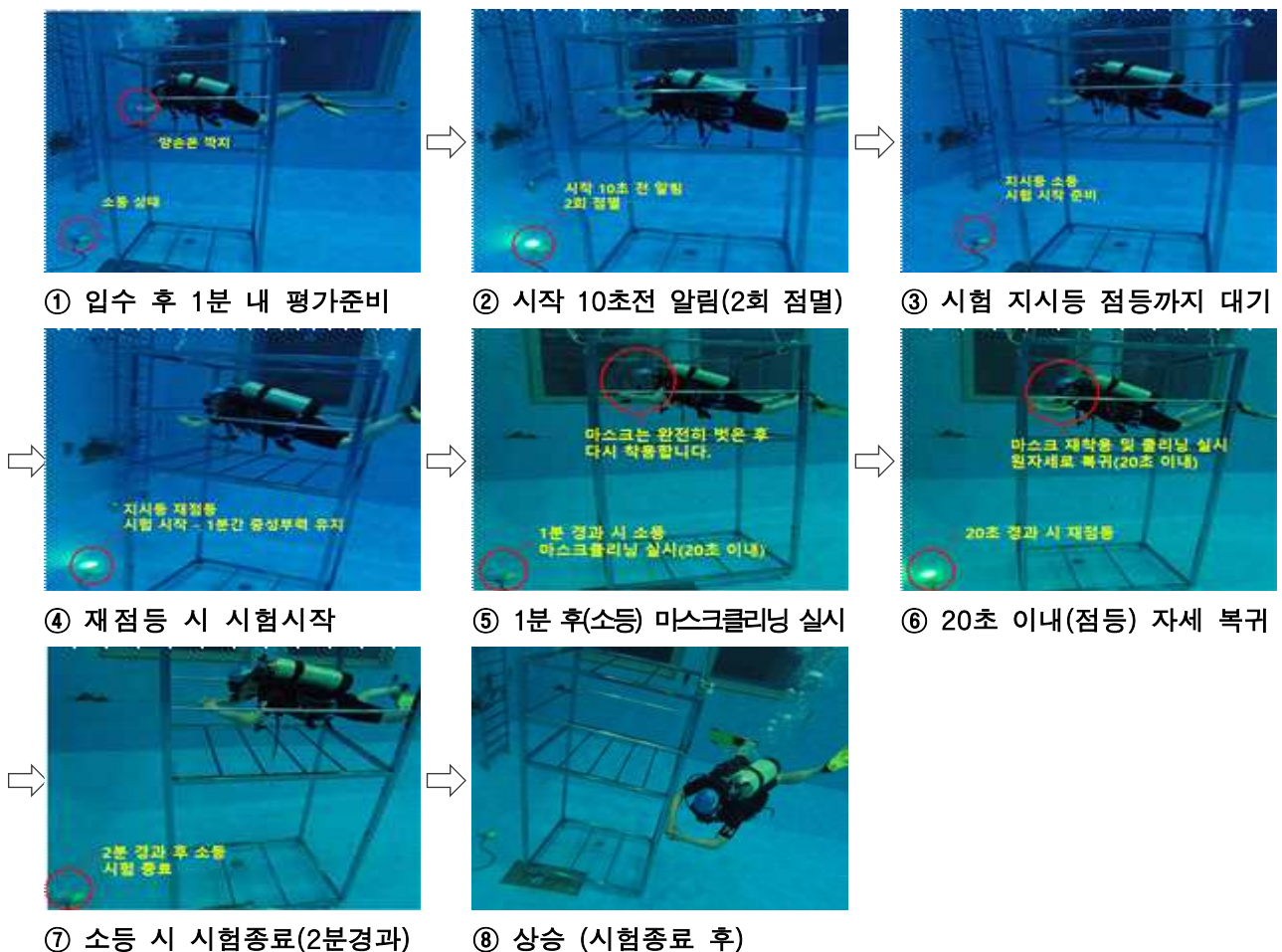
- **잠수장비 장착 불량 및 미숙** 등은 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**잠수 종목(중성부력, 베일아웃) 응시가 불가합니다. (0점 처리)**
- 응시자 간 장비 착용에 대한 조언 및 대리 장착을 해주는 경우 등은 **쌍방 모두 부정행위**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#### □ 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(약칭 : 중성부력)

- 잠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2분간 중성부력 유지 능력을 평가합니다.
- 준비완료 후 앉은 자세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입수를 시작합니다.
- 입수 후 1분\* 내 사각구조물에 들어가 중성부력 평가 준비(부력조절 가능)를 완료\*\*해야 하며, 시간 경과 후 즉시 측정이 시작됩니다.

- \* 입수 후 50초 경과 시 지시등이 2회 점멸되며 「평가시작 10초 전」 고지
- \*\* 공기통까지 구조물 내에 위치시켜야 하며 손은 전면을 향해 각지 자세를 유지하고(손과 팔로 위치 및 부력조절 행위는 금지), 킥에 대한 제한은 없음
- 1분 후 지시등이 점등되면, 중성부력 기록측정이 시작됩니다.
- 평가시작 1분 후 지시등이 꺼지면 **마스크 전체가 머리에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벗어 팔을 앞으로 곧게 폈다가 재착용**한 후 20초\*내 마스크 클리닝(중성부력은 유지)을 실시하고 원자세로 복귀해야 합니다.
  - \* 지시등이 소등된 후 20초가 경과되면 재점등 됨
- 지시등 소등(2분) 시 평가 종료. 수면으로 상승하여 벽에 양손(마스크 및 착용장비 축수 금지 : **실격사유**) 대고 감독관의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합니다. \* **중성부력 종료 후 장비 조정 없이 베일아웃 평가**

※ 시험진행 개요도



**[감점사유] : 감점사유 발생시 수중감독관이 별도로 불빛으로 고지\***

\* 감점사유에 대한 고지의 목적은 수험생의 감점사유에 대한 미인지로 인한 지속적 감점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로, 감점 사실과 수험생의 인지는 무관함.

- 시험시작 이후 종료까지 착용 장비\* 또는 신체 일부(깍지를 낀 손 포함)가 이동한계 범위\*\* (1.5m×1.1m×1.1m) 밖으로 넘어서거나 구조물 접촉 시 각 행위 당 -1점
  - \* 게이지가 아래로 늘어져 구조물 바닥에 닿는 경우는 제외
  - \*\* 하반신에 대한 평가는 공기통 일부가 구조물을 벗어 날 경우
- 계속적인 이동한계 범위 초과 및 구조물 접촉 시 3초 경과마다 -1점
- 물안경의 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거나, 마스크 끈 꼬임(마스크 클리닝 불량) -1점

**[중지(종료)사유]**

- 마스크 클리닝 시간 외 깍지를 풀어 양손이 떨어질 경우 즉시 평가 정지(종료)하고, 측정된 시간까지만 점수 인정(감점 요소를 모두 계산하여 점수 기록)

**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**

- 평가전 사전 공지된 금지행위를 할 경우
- 시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구조물(케이지)을 손으로 잡을 경우
- 20초 내 마스크클리닝 종료 후 원자세(전면 손깍지) 복귀가 불가할 경우

※ 공통사항 : 시험평가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임의적 시험방법의 변경은 실격 처리

**□ 수중 잠수장비 탈·부착능력(약칭 : 베일아웃)**

- 중성부력 시 사용한 장비는 교체 및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.
-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수없이 하잠 한 후 30초 이내에 시작위치\*로 이동하여 시작 지시 등이 점등될 때까지 신호를 기다립니다.

\* 수중에 있는 시작과 종료 위치는 동일하며, 구조물(케틀벨) 등으로 표시

- 장비는 중성부력 측정 시 착용한 상태 그대로 평가에 임해야 하며, 하잠은 헤드-업(Head-up)형식으로 하되 하잠 시 BC자켓의 공기 배출을 위한 디플레이터 호스(버튼)와 이퀄라이징(내외압 평형)을 위한 마스크 축수를 제외하고 다른 장비를 만지는 행위는 금지합니다.
- 하잠 후 시작위치로 이동하여 준비자세(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손은 만세자세로 머리 위로 올린 자세)를 갖춘 후 시작신호\*(하잠 후 30초 경과 시 점등)를 기다립니다.

\* ‘중성부력’과 동일한 지시등이 점등되면 시작. 준비를 알리는 별도 점등은 없음.

○ 지시등 점등과 동시에 측정은 시작되며, 정해진 시간(30초) 내에 준비자세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 무릎이 반드시 바닥에 닿은 후 장비 탈의를 시작\*해야 합니다.

\* 양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고 장비탈의를 시작할 경우는 ‘시험의 임의변경’으로 실격

○ 마스크, 핀 등 장비는 양성부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중에서 뜨지 않도록 바닥에 거치하며, 공기통 밸브는 반드시 잠그고 퍼지버튼을 눌러 호흡기 내부 공기를 완전 배출 후 상승합니다.

○ 수중에서 최종으로 장비 착용을 완료하고 응시자 앞에 종료·시작 지점 (케틀벨 등으로 표시)을 터치\*한 순간까지의 기록을 측정합니다.

\* 응시자는 수면상에서 터치 순간이 확인(거수 등)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

○ 시험 종료 후 수면으로 상승하여 벽에 양손을 댄 상태를 유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릅니다. (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착용장비 축수 엄금)

### ※ 시험진행 개요도



### [감점 사유]

- ▶ 시작신호가 점등될 때까지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은 경우 - 2점
- ▶ 입수 후 슈트를 제외한 착용장비를 완전히 벗지 않고 부상한 경우 개소별 -2점  
※ 물안경을 벗지 않은 경우는 **실격처리**(시험방법의 임의변경으로 간주)
- ▶ 버클·핀 미착용 등 장비가 정확하고, 완전한 착용이 이뤄지지 않은 개소별 - 2점
- ▶ 물안경의 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경우(마스크 클리닝 불량) - 1점
- ▶ 공기통 밸브 잠김 불량 및 호흡기 호스 등 내부공기 완전 배출 불량 - 1점
- ▶ 마스크 끈, 호흡기, 어깨 끈 등 단순 끈 꼬임(접힘) 발생 시 개소별 -0.5점

### 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

- ▶ 응시자가 착용완료 표시한 후부터 시험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착용 장비에 손을 대는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
- ▶ 물안경을 벗지 않은 경우(시험방법의 임의변경으로 간주)
- ▶ 시험평가 중 공지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 
**※ 공통사항 : 시험평가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임의적 시험방법의 변경은 실격처리**

## 4. 구조능력 측정 - 4kg 착용 손 들고 떠 있기, 구조수영(42m), 수영(100m)

### □ 중량 4kg(웨이트 벨트) 착용 손 들고 떠 있기

- 중량물(웨이트 벨트)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걸쳐도 상관없습니다.
- 시작은 시험관계자의 준비구령 다음 응시자의 '시작 신호'에 따라 신체가 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측정을 시작합니다.
- 떠 있는 상태는 손목\* 및 턱선과 양쪽 귀를 기준으로 얼굴 전체가 수면위로 나와야 합니다.  
\*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중지(종료)시킬 수 있음
- 손을 들고 발로만 상태를 유지하며 제한범위(2m X 3m)안에서 회전 없이 제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떠 있어야 합니다.

- 개인 기록 참고용 손목시계 착용은 가능하나, 시험 측정용 팔찌 착용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.

**[감점 사유]**

- ▶ 손목 및 턱선, 귀 중 어느 한 부위가 물에 잠길 경우, 1차 경고 이후 각 위반 행위 당 -1점

**[중지(종료)사유]**

- ▶ 제자리에서 좌·우로 90°이상 회전하거나 제한라인에 걸치는 경우, 1차 경고 후 2차 경고 시 즉시 평가 중지(종료) 하고, 그때까지의 기록만 인정
- ▶ 손목 및 턱선, 귀의 침수 감점 사유로 **-5점이 될 경우 즉시 중지(종료)**하고 그 때까지의 기록만 인정 (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)

**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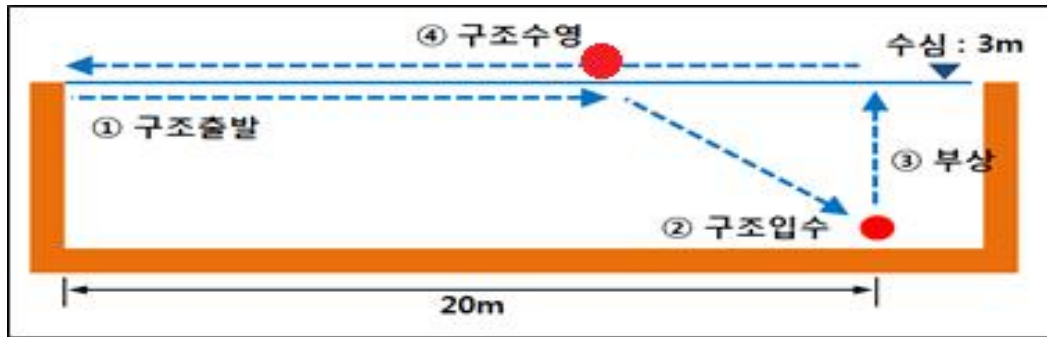
- ▶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력 수영복 / 몸속 기체 주입 / 기타 용품 착용 등 부정 행위 시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등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38조에 따라 처리
- ※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감독관이 직접적인 신체접촉 또는 특정 자세를 요구할 수 있음.

**※ 시험진행 참고사진**



## □ 구조수영(42m)

- 양방향에서 2명이 각각의 레인에서 출발 및 계측을 실시합니다.



- \* 수영장은 길이 21m, 수심 3m의 시설을 이용합니다.
- \*\* 구조 대상(마네킹)의 다리 길이 등을 감안하여 21m 수영장 벽에 등을 기대도록 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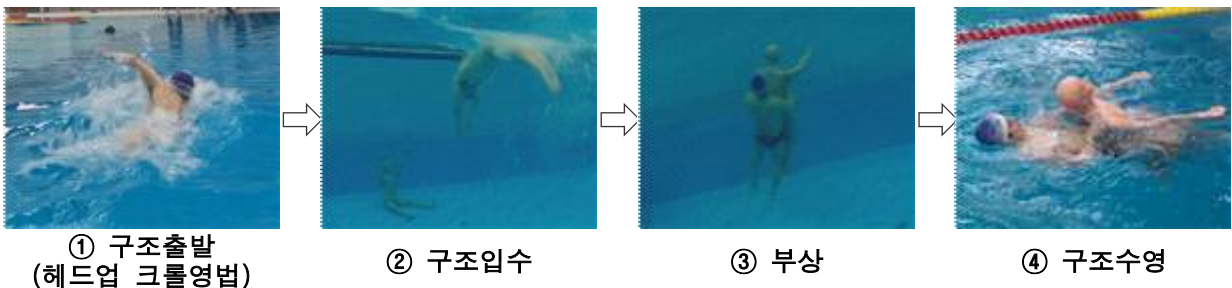
※ 참고사항 : 마네킹 신장 163cm, 육상 무게 18kg 기준

- 응시자는 배정된 레인에서 수영하여야 하며 평가 중 레인을 이탈하거나 他응시자를 방해할 경우 실격처리합니다.
- 부정 출발신호\*는 연속된 호각신호(삐-삐-삐-)로 중지하고 다시 출발하며, 부정 출발 2회 시에는 실격처리합니다.
  - \* 출발신호는 현장에서 타 종목 평가진행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 가능
- 전방 20m, 수심 3m 지점에 구조대상(마네킹)을 구조하여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계측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.
- 출발자세는 입수한 상태에서 벽을 한 손으로 잡고 계측자의 출발 신호에 따라 벽을 발로 차며 출발, 15m 지점에서 구조 입수합니다.
- 구조영법\* 시행 시 익수자가 물에 가라앉기 전 위치를 가정하여 입수 직전까지 정면을 바라보고 영법을 시행해야 합니다.

\* 구조영법은 헤드업 자유형(크롤영법)으로 하며, 잠영은 불가. **영법위반 시 실격**

- 수면아래 앉아있는 구조대상(마네킹)을 구조하는 즉시 수면 위로 부상\*(수직부상이 아니어도 무방)하며, 구조대상(마네킹)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출발지점으로 돌아옵니다.
  - \* 즉시 부상 : 구조대상을 구조 후 부상 위치는 5m(지정된 입수지점)를 벗어날 수 없음 (위반 시 정해진 영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**실격처리**)
- 구조대상(마네킹)의 운반은 구조영법 중 '양손 겨드랑이 끌기'를 원칙으로 하며, 발차기의 제한은 없습니다.
- 구조대상(마네킹) 얼굴은 수면 부상과 함께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, 구조자 및 구조대상(마네킹)의 얼굴이 침수 되어서는 안 됩니다.
- 종료지점에서 손이나 신체 일부가 터치되는 순간까지의 기록을 측정합니다.

※ 시험진행 개요도



[감점 사유]

- 구조대상(마네킹) 운반 시 구조자 및 구조대상의 얼굴이 침수 될 경우 대회 - 1점

[실격사유] : 실격 시 평가 즉시 중지, 해당종목 0점 처리

- 구조대상(마네킹) 운반 시 '양손 겨드랑이 끌기'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(손목, 목, 다리 등)를 이용한 끌기를 할 경우 1차 경고, 2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
- 출발영법 등 정해진 영법 위반 및 구조대상(마네킹)을 놓친 경우
- 구조대상(마네킹) 운반 시 구조대상의 얼굴이 지속적(3초 이상)으로 침수\* 될 경우 1차는 경고, 2차는 실격처리
  - \* 지속적 침수가 아니더라도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평가를 정지(종료)시킬 수 있음
-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시험방법 지시 위반 시

## □ 수영 100m 능력측정

- 영법(자유형, 평영, 배영, 접영)의 제한은 없습니다.
  - \* 단, 수영복은 무릎 위까지 오는 수영복이나 사각·삼각 수영복에 한해 허용하며, 여성 수영복 역시 동일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.
- 6명씩 1개 조로 출발하며, 물에 입수하여 한 팔로 벽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벽을 차며 출발합니다. 단, 사정에 따라 출발대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.
  - \* 출발 인원 수는 당일 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출발은 '준비'구령 다음에 '호각 1회(삐)' 신호와 함께 출발합니다.
  - \* 레인마다 진행요원이 출발지점과 반환지점에 배치되어 지정된 레인에 대해 출발지점에서는 계측하고, 반환지점에서는 터치 확인
- 부정 출발신호는 연속된 호각신호(삐-삐-삐-)로 중지하고, 중간에 걸릴 수 있는 줄을 내려 중지 후 다시 출발합니다.
- 부정출발을 2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.
- 출발 시 잠영은 출발지점부터 15m이내로 제한하고 50m지점 턴 방법은 제한은 없으나, 반드시 반환점을 터치하여야 합니다.
- 반환점(50m)을 완전히 터치하고 돌아서 종료지점에 손으로 터치하는 순간까지의 기록을 측정합니다.

### 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

- ▶ 부정출발을 2회 실시한 경우 실격처리
- ▶ 출발지점부터 15m 이상을 잠영으로 수영할 경우 실격처리
- ▶ 50m반환점을 터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실격처리
- ▶ 출발 후 고의로 레인을 잡거나, 신체의 일부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경우 실격처리
- ▶ 정해진 레인에서 수영하여야 하며 레인을 이탈하거나 타인을 고의로 방해하면 실격처리
- ※ 타인의 방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레인을 잡거나 발이 바닥에 닿은 경우는 재측정 가능

## 6. 실기시험 평가표

### 특공 · 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[육상]

응시 분야		응시 번호		응시 지역		성명	
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	--

필적감정용 기재란	(예시문) : 본인은 상기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.	생년 월일	
	본인필적 :		

평가내용		배점기준(점) * 기준 미만 0점							득점	확인 (감점내용기입)
		13	12	11	10	9	8	7		
턱걸이	기준 (회)	30 이상	29~27	26~24	23~21	20~18	17~15	14~12	응시자 확인	(서명)
	기록									
왕복달리기 [100m 허들] * 1/100초 미만 절사	기준 (초)	36 이하	36.01~ 37.00	37.01~ 38.00	38.01~ 39.00	39.01~ 40.00	40.01~ 41.00	41.01~ 42.00	응시자 확인	(서명)
	기록									
평가내용		배점기준(점) * 기준 미만 0점							득점	확인 (감점내용기입)
		14	13	12	11	10	9	8		
2km 달리기 * 초 단위 미만 절사	기준 (분:초)	6:50 이하	6:51~ 7:00	7:01~ 7:10	7:11~ 7:20	7:21~ 7:30	7:31~ 7:40	7:41~ 7:50	응시자 확인	(서명)
	기록									
득점계		만 점 (40점)								점

관리관	계급(직급)		성명	(인)
-----	--------	--	----	-----

# 특공 · 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[잠수 · 구조]

응시 분야		응시 번호		응시 지역		성명	
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	--

필적감정용 기재란	(예시문) : 본인은 상기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.	생년 월일	
	본인필적 :		

평가내용		배점기준(점) * 기준 미만 0점							득점	확인 (검사용기입)	
		13	12	11	10	9	8	7			
잠수 능력 (21점)	잠수장비 결합	불량 * 잠수능력 시험응시 불가							(응시자 확인)		
	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 (1분 후 마스크 * 1분 미만 단위 철사)	배점 (점)	13	12	11	10	9	8	7	응시자 확인	(서명)
		기준 (분:초)	2:00 이상	1:50~ 1:59	1:40~ 1:49	1:30~ 1:39	1:20~ 1:29	1:10~ 1:19	1:00~ 1:09		
		기록	견본							응시자 확인	
	수중 잠수장비 탈·부착능력 (* 초 단위 미만 철사)	배점 (점)								8	7
		기준 (분:초)	1:30이하	1:31~1:40	1:41~1:50	1:51~2:00					
	기록								응시자 확인		
평가내용		배점기준(점) * 기준 미만 0점							득점	확인 (검사용기입)	
		13	12	11	10	9	8	7			
구조 능력 (39점)	수영능력 (100m) (* 초 단위 미만 철사)	기준 (분:초)	1:10 이하	1:11~ 1:15	1:16~ 1:20	1:21~ 1:25	1:26~ 1:30	1:31~ 1:35	1:36~ 1:40	응시자 확인	(서명)
		기록									
	구조수영 (42m) (* 1/100초 미만 철사)	기준 (분:초)	37:00 이하	37:01~ 40:00	40:01~ 43:00	43:01~ 46:00	46:01~ 49:00	49:01~ 52:00	52:01~ 55:00	응시자 확인	(서명)
		기록									
	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(발로만 상태유지) (* 초 단위 미만 철사)	기준 (분:초)	2:15 이상	2:14~ 2:10	2:09~ 2:05	2:04~ 2:00	1:59~ 1:55	1:54~ 1:50	1:49~ 1:45	응시자 확인	(서명)
		기록									
득점계		만 점 (60점)							점		

관리관	계급(직급)		성명	(인)
-----	--------	--	----	-----